

제주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6가단58729(본소), 2017가단55024(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기계대금 청구]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상미  
변론 종결 2019. 4. 9.  
판결 선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3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B골 골판지 제작기계 2대로 B골 골심지 2개를 합지하여 BB골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B골 골심지와 E골 골심지를 합지한 EB골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2016. 5. 24. 피고로부터 E골 골판지 제작기계(중고수리품)인 "E골 싱글웨어샤 1450mm(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7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리설치, 시운전, 그리고 배관 및 전기 회선, 데크업 라인의 설치까지 하여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원고)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을(피고)에게 지불하고 을은 정히영수한다.

**1. 잔여금 50,0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현금 일시불로 한다.**

1. 납품일자는 2016. 6.까지로 한다.

1. 만약 을이 본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손해는 을이 지체없이 보상하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운전은 갑의 책임이므로 잔금을 완불하고 갑이 시운전을 요청한 통고일로부터 즉시 조립 및 시운전을 완료한다.

[특약] 현장설치 및 시운전 포함 1년간 A/S해주기로 한다.

계약금은 계약불이행시 매수인이 포기하기로 한다.

다. 원고가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그 후 2-3회 정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을 시도하였다.

라.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정상 작업이 가능하다면서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9. 19.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는 규격 및 성능이 맞지 않아 완공이 불가능한 불량 기계로 골판지의 골이 깨지고 합지 공정에서 원지가 탈락되는 등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시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2016. 9. 30.까지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1. 17. D로부터 E골 골판지 제작기계(중고수리품)인 'E골 싱글레샤 골롤라'를 대금 22,000,000에 매수한 후 2016. 11.

28.경부터 이를 통해 EB골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고 시운전의 완료를 요청하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시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과 20,365,300원<sup>1)</sup>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고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기계는 연식이 오래된 중국산 중고기계로 상·하 롤러의 골 형성 부분이 마모되고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E골 골심지가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원지가 끼이거나 씹혀 손상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부분 도색처리만 하여 2016. 6. 16.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사실, 그 후 이 사건기계의 노후화 및 수리 부실로 인하여 2-3회 정도 실시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에서 골심지의 골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손상된 골판지가 생산되는 등으로 정상적인제품 생산이 되지 않은 사실, 그 결과 원고가 2016. 9.경 실시된 피고의 시운전 과정에서 제조된 EB골 골판지 상자 4,500개를 2016. 9. 25. G에 1개당 550원에 공급하였으나 손상된 제품이 많아 2016. 11. 24. 그 중 1,800개가 반품된 사실, 이 사건 기계로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고 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인 전면적인 대수리가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으로부터 두 달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정상 가동이 가능한 수준의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완료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시운전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10. 12.자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2016. 10.17. 도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나.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1) 계약금 반환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위 계약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가 2016. 9. 25. G에 이 사건 기계로 제조된 EB골 골판지 상자 4,500개를 1개당 55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2016. 11. 24. 1,800개가 반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운전과정에서 제조된 위 골판지 상자를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을 피고도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반품된 골판지 상자대금 990,000원(1,800개 × 550원)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 가동할 것으로 믿고 H조합으로부터 EB골 골판지를 주문받아 미리 I에 원지대금 14,265,900원, J에 인쇄대금 5,009,400원을 지출하여 인쇄까지 마친 원지를 준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지대금 및 인쇄대금 합계19,275,3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갑제12호증의 1, 2)상 인쇄용역이나 원지를 공급받았다는 일자가 2016. 12. 24.인바, 이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새로운 E골 골판지 제작기계를 구입한 이후의 시점이므로 위 손해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과 관련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도 더 경과한 2019. 1. 15.에서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99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90,000원(계약금 25,000,000원 + 손해배상금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의 2)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시운전의 완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1) 아래 나.의 2)항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적 손해 항목의 합계액은 20,265,300원인바, 원고의 계산 착오로 보인다.